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민원(1BA-1808-055014) 처리결과 안내

---

1. 관련: 민원번호 1BA-1808-055014
2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BA-1808-055014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귀하의 민원내용은 “세척제 사용기준 위반사항 확인 문의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「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약처고시 제2018-19호) 제3. 개별기준 및 규격 1.세척제 5) 사용기준 (3)에는 ‘2종,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,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  - 이 고시 내용은 소비자(집단급식소, 식당, 가정 등)들이 세척제를 사용하여 음식기, 조리기구 등을 세척한 후 음식기 등에 세척제 성분이 최대한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도록 권고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.
  - 이와 관련하여,
    - 식약처에서는 ‘2종, 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,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’ 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,
    - 교육부는 ‘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(4판 개정판)’를 통해 세척제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고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·헹굼·소독·건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(교육)하고 있습니다.
  - 세척제(위생용품)를 이용하는 식기세척기의 잘못된 시스템을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  - 식약처에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집단급식소 등에서 세척제의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여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 및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‘자동식기세척기 사용방법에 따른 세척제 등 잔류실태조사 및 저감화 방안 연구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참고로, 위생용품에 대한 정보는 ‘우리처 홈페이지(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) > 국민소통 > 국민신문고 > 자주하는 질문’ 또는 ‘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([www.foodsafetykorea.go.kr](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)) > 식품·안전정보 > 위생용품 정보’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4.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·담배관리TF 박정호주무관(☎043-719-1741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붙임 : 민원신청서. 끝.

---

정책연구원	연구관	위생용품·담배 2018.8.10. 관리TF 팀장
협조자		
시행	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- 4287	접수
우 28159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	/ <a href="http://www.mfds.go.kr">www.mfds.go.kr</a>
전화번호	043-719-1743	팩스번호 043-719-1710 / <a href="mailto:csy1025@korea.kr">csy1025@korea.kr</a> / 비공개(6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